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3900     |
| 의 퇴 인 | 김용민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12.29. |
| 추계번호  | 25D5859     |

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9조(헌법연구관) |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68조(청구 사유) | 법원의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9조(헌법연구관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68조(청구 사유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#### □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연장(안 제19조)

- 개정안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 경우, 5년의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정원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헌법연구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평균 재직기간의 증가로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 등의 인건비가 증가하고,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수당과 연금수급개시연령 도달 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퇴직수당 = 기준소득월액 × 재직기간 × 재직기간별 지급비율(6.5%~3.9%)
  - 퇴직연금 = 전체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× 재직기간 × 연금지급률(1.9~1.7%)
- 한편, 퇴직연금의 경우, 개정안에 따라 퇴직시점이 늦어지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현행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동일한 사망률 적용 시 현행보다 연금수급기간이 감소하므로 총 연금수급액이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- 19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,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차이가 있음
- 2024~2026년: 62세, 2027~2029년: 63세, 2030~2032년 64세, 이후 65세
- 다만, 현재 재직 중인 각 헌법연구관들의 퇴직시점, 연금수급개시연령,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월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5년 12월 기준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은 75명으로, 평균 근무연수는 약 9.9년임

□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(안 제68조)

- 현행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음
-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질 경우 이에 따른 심판절차 진행 건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증가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참고로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청구건수 및 2025년 기준 헌법재판소 재판활동운영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2020~2024년 헌법소원 청구건수

| (단위: 건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     | 68조1항 헌법소원 <sup>1)</sup> | 68조2항 헌법소원 <sup>2)</sup> |
| 2020    | 2,472                    | 744                      |
| 2021    | 2,201                    | 585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    | 2,322                    | 459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    | 1,935                    | 617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    | 1,788                    | 698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헌법재판소

- 
- 1)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(청구 사유)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(不行使)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.
- 2) 「헌법재판소법」 제68조(청구 사유)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.

[표 2] 2025년 기준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년도 예산(조정액 기준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헌법재판업무지원  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| 267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공동부·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비 등 | 195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연구회 운영비 등              | 73                |
|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비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| 221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          | 69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헌법재판 운영지원경비            | 152               |
| 기록물 관리 및 보존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43               |
|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|
|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|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671               |

자료: 헌법재판소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임홍연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임홍연 | 02-6788-4673 | limhy@assembly.go.kr |